

협동정신

— 향약을 지키고 계를 모으는 옛 마을의 생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제공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한 집안이 혼례나 상례와 같은 대사를 치를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그 집안 일을 돕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모두들 물건을 빌려주거나 음식을 맡아서 해주고 심부름을 대신하는 등 온 마을이 모든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보기를 맡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식의 준비를 맡았다. 돈이나 음식으로 돕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이나 먼 마을에 사는 친척들에게 소식을 알리러 가기도 하고, 필요한 일손을 메꿔주기도 하였다. 대개 한 마을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느 집의 누구 제사가 언제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또 어떤 집이 화재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을 때, 이웃사람들은 다시 집을 짓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돌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짚을 구해 날라다 주고, 집이 완성될 때까지 며칠씩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 타관 사람이 자기 마을에 이사해 오면 짐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음식을 해서 돕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가운데 병이 나면 약을 가진 사람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었으며 약값은 것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은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誠敬)의 정신을 살려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돕고 서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향약(鄕約)과 계(契)가 바로 이러한 생활풍속의 대표적인 것이다.

옛날 우리의 향촌에는 권선징악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자치적인 규약으로 향약을 두었다. 향약은 본래 중국의 북송 말기에 섬서성의 염전현에 살던 여씨 일문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씨의 향약은 후에 주자(朱子)에 의해서 보완되어 중국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규약이 되었다. 후세에 와서 일반적으로 향약이라고 하면 으레히 주자향약을 가리키며, 그 사대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덕스러운 일을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둘째로 잘못된 일을 서로 경계하며(過失相規), 셋째로 예의바른 습속을 지키면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넷째로 환난을 당했을 때 서로 구제한다(患難相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향약이 조선왕조의 중엽부터 널리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명종과 선조의 시대에 이르러 퇴계의 예안향약, 율곡의 서원향약과 해주향약 등 전국적으로 향약을 두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율곡의 해주향약에 나타난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일곱가지의 항목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웃에 대한 뜨거운 인간애의 정을 읽을 수 있다.

수재(水災)나 화재(火災)를 당했을 때, 작으면 사람을 보내어 구조하고 심하면 친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구조하며 또 위로하고, 만약 이로



인하여 식량이 떨어졌으면 여럿이 의논하여 재물로써 구제한다.

도둑이 들었을 때, 가까운 이는 쫓아가 협력하여 잡고 힘이 세어 감당하지 못하면 관사(官司)에 고한다. 그 집이 가난하면 의연금을 내어 돕고, 만일 이로 인하여 조석(朝夕)의 끼니를 잇지 못하거나 또 옷을 헐벗게 되면 여럿이 의논하여 재물로써 구제한다.

질병에 걸렸을 때, 가벼우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심하면 의논하여 비용을 돕고, 만일 온 집안이 병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약원(約員)들이 협력하여 종과 소를 내어 갈고 매주며 벼메기를 줄 만한 처지이면 성실한 사람을 가려서 준다.

상(喪)을 당했을 때는 조문하고 부조하되, 만일 매우 가난하여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처지이면 여럿이 의논하여 보통의 부조 이외에도 재물을 내어 돕는다.

약원이 죽어 그 어린자식이 외롭게 되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집이 넉넉하면 친족 가운데서 정직하고 신실(信實)하며 일을 주관할 만한 이를 가려서 이에 대처하고 그 재산의 출납을 자세히 보살피게 하며, 그 집이 가난하여 자급할 수 없으면 약원들이 협력하여 구제하고 의탁할 데를 잃지 않게 한다. 만일 침해하고 속이는 자가 있으면 여러사람들이 힘써서 밝히고, 그 아들이 조금 자라면 사람을 택하여 가르치게 하고 또 혼인하는 일을 도와준다.

억울하게 몰린 경우가 있을 때, 즉 약원 가운데서 남에게 무고(誣告)를 당해 죄나 허물을 자기 힘으로 벗지 못하는 이가 있는 경우에, 형세가 관부(官府)에 고할만한 것이면 고하고 계책으로 구해낼 만한 것이면 그렇게 한다. 혹시 그 집이 이로 인하여 의지할 바를 잃으면 여럿이 함께 재물로써 구제한다.

극히 가난한 사람이 생겼을 때, 즉 약원 가운데서 가난을 참고 분수를 지키고자 하지만 생계가 어려워 먹을 것이 끊어지는 이가 있으면 재물로써 구제하고, 처녀가 혼인할 시기를 넘기게 된다고 여겨지면 약원들이 연명으로 관(官)에 배필을 정해 주도록 진정한다.

(손 인수, 「율곡의 교육사상」에서)

이러한 향약의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일생 중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가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불운을 당했을 때, 함께 염려하고 몸과 마음과 재물로써 도우면서 이웃을 지켜주는 풍습이 우리의 전통사회에 있어 왔다는 것은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랑거리이다. 역경에 처한 사람이 살 길을 얻고 밝은생활을 되찾는 것을 보는 일, 그것은 비단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베푼 사람의 즐거움이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향약이 본래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이를 수용할 만한 인간애의 바탕이 없었다면 이 땅에 그토록 활발하게 보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오늘날까지도 일부 농촌에 전승되고 있는 각종의 계 조직도,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부락민들 상호간의 강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된 협동조직이었다.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협동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계 조직은 오늘에와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 조직의 목적과 형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예컨대 마을에 다리를 놓거나 하천공사에 필요한 기금적립을 위해 조직하는 이중계(里中契)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일년에 춘추의 두 차례씩 응분의 추렴을 걷어 이식하거나, 이른바 ‘마을 공동담’을 사들여 그 수확을 모아 공사비로 충당할 정도였다.

또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게 하고, 새로 나무심기를 장려하기 위해 조직했던 이른바 송계(松契) 또는 송금계(松禁契) 같은 협동조직은 당번을 정해 자진해서 도벌행위를 감시하였다. 적발되면 계장의 처분으로 30대 내지 50대의 태형(笞刑)을 하게 하는 등 일종의 자치 행정기능까지 담당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향약과 계의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웃간에 서로 돕고 협동하는 생활풍습이 이루어졌다. *